

#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결정(안)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

의안 번호	9-89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단원구 신길동 232번지 일원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인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,
-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 법적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

##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 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. 다만,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(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 
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
주요내용

- 위치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32번지 일원
- 사업내용 :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
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주요 내용
  - 공원신설 : 13,933㎡
- 위치도 및 공원조성계획(안)

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1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  - 1) 공간시설 : 공원
    - 가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71	근린공원	단원구 신길동 232번지 일원	-	증)13,933	13,933	-	개발 제한 구역

나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결정사유
71	근린공원	• 근린공원 신설 - 면적 : 증) 13,933㎡	•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복구사업 일환으로,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 결정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

관련도면

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: 【붙임 1】

추진 경위 및 계획

○ 추진경위

-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 : 2020. 05.
- 안산 신길2 훼손지 복구계획(안) 심의(중앙도시계획위원회) : 2021. 11.
-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 : 2025. 09.

○ 추진계획

-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: 2025.10.
- 지방의회 의견 청취 : 2025.10.
- 안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: 2025.11.
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: 2025.12.

##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결정(안)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

“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결정(안)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함.

-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근린공원을 신규 결정하려는 것으로,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사업시행자의 입안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로써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상 대상지 선정에 한계가 따르는 것은 이해되나,
- 이와 같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들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실제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,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향후 많은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, 도시계획과와 공원과, 녹지과에서는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 협의 시 시민 접근성과 활용방안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공원·녹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